

2024학년도

##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4년 5월 28일(화) 16:3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위원회 의원(11명)

■참석의원 : 정동훈, 권인철, 정용식, 이강훈, 유경선, 천성오, 허유빈,  
김준세, 김은채, 이재현, 반중혁(11명)

■불참의원 : 강성률

4. 안 건

가.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나.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다.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
5.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

- 서정훈 간사(이하 '간사')가 성원 및 기획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다.
  - 재적의원 12명 중 10명 참석
  - 정동훈 의장이 다른 회의 일정으로 불참함에 따라, 권인철 부의장(이하 '부의장')이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다.
- 부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본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, 회의를 주관하다.
  - 정동훈 의장(이하 '의장')이 중간에 참석(17:03)함에 따라 재적의원 12명 중 11명 참석

가.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전홍배 처장(이하 '교무처장')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- 유경선 의원이 '소정기간'이라는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다고 개진하다.
- 반중혁 의원이 동의를 표하며, 의미가 모호하여 부적합하다고 설명하다.
- 교무처장이 공고기간이 개강일에 따라 다르므로 '소정기간'은 해당 학기에 공고한 기간을 의미하며, 개강 전이라고 설명하다.

- 부의장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는 '입원확인서'를 제출하고 질병휴학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- 교무처장이 '상급종합병원 이상 전문의의 4주 이상의 진단서'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다.
- 이재현 의원이 '상급종합병원'을 '종합병원'으로 완화하여야 취지에 부합하다고 개진하고, '질병'에 국한하기보다는 '상해'도 추가해야 한다고 부연하다.
- 이강훈 의원이 '일반휴학'에 '질병휴학'이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다.
- 부의장이 「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 제25조(휴학의 종류)에 의하면 일반휴학에 '질병휴학'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, 타 대학 사례를 보면 입원확인서,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개진하다.
- 정용식 의원이 타 대학 사례를 보면 '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'로 되어 있다고 개진하다.
- 부의장이 제48조의3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참빛인재대학으로 2024학년도에 입학자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언급하다.
- 부의장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.
- 부의장이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,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.
- 부의장이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- **의결내용 : 제29조제2항은 수정 가결하고, 이외 개정(안)은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  - 제29조제2항 이 외에 원안대로 가결(표결 : 원안대로 가결 11명)
  - 제29조제2항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  
(표결 : 원안대로 가결 5명/수정 가결 6명)

개 정 안	수 정 안	심의 결과
제29조(휴학)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<u>소정기간 내에</u>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.	제29조(휴학) ① (좌 등)	원안 가결
② 일반휴학 중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<u>상급종합병원 이상 전문의의 4주 이상의 진단서</u> 를 첨부하여야 한다.(신설)	② 일반휴학 중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<u>종합병원 이상 전문의의 4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</u> 를 첨부하여야 한다.(신설)	수정 가결
제33조(복학의 시기) 휴학한 자의 복학은 <u>개강 후 3주</u>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	제33조(복학의 시기) (좌 등)	원안 가결
제48조의3(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)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	제48조의3(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) (좌 등)	원안 가결

<p>법률」 제7조에 근거하여 참빛인재대학 재학생이 입학 전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거나, 전공별 관련 자격증이나 어학성적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」로 따로 정한다.(신설)</p>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(좌 동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안 가결</p>

**나.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**

-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- 부의장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.
- 부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.
- 부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  - 출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

**다.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**

-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다.
- 김양래 교학부장(이하 '교학부장')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- 부의장이 폐지하는 전공에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지 질의하다.
- 교학부장이 재적생은 있으며, 폐지는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다.
- 의장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.
- 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.
- 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- **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**
  - 출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

**6. 폐회**

위원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불 입 : 회의자료 1부. 끝.

2024년 5월 28일

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.

의 장	정 동 훈	(서명) c.
부 의 장	권 인 철	(서명)
평 의 원	정 용 식	(서명)
평 의 원	이 강 훈	(서명)
평 의 원	유 경 선	(서명)
평 의 원	강 성 룰	(서명)
평 의 원	천 성 오	(서명)
평 의 원	허 유 빈	(서명)
평 의 원	김 준 세	(서명)
평 의 원	김 은 채	(서명)
평 의 원	이 재 현	(서명)
평 의 원	반 중 혁	(서명)